

교내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I.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과업지시서

II. 통합경비시스템 기기규격 및 설치 시방서

III. 통합경비시스템 계약 특수조건

2024. 02.

광주여자대학교

I.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과업지시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구축을 통해 범죄예방과 화재예방, 주요 시설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내 취약지역과 건물내부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부가서비스 운영으로 학내 구성원이 24시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 구현

1. 경비 대상물

- 대상물의 명칭: 광주여자대학교
- 경비대상: 9개동(무인경비 447개 , 출입통제 69개소)
- 주 소 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40 (광주여자대학교 캠퍼스 내)
- 용역범위

구 분		수 량	내 용	비 고
기 존 시 스 템	무인경비	447개소	무인경비 운영 전실 락장치 설치(EM락 및 테드볼드)	
	출입통제	69개		
	CCTV(학교)	104개	200만화소, FULL HD/각관 현관 500만화소, FULL HD	
	CCTV(기숙사)	91개	IP200만화소카메라	

※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무인경비시스템은 본관 경비실로 연결
(컴퓨터, 모니터, 부대장비 포함)

2.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공사기간 동안 시스템 연계 가능한 무인경비사 직원은 상주해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에 의한 경비 제공

- 경비구역
 - 대학에서 지정하는 행정실,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 등 실별 경비
- 각 실별 무인경비시스템은 실의 사용자가 운영함
- 건물의 현관 : 스케줄 제어에 의한 자동 잠금과 풀림 제어
- 통합경비상황실의 감시체계 구축 : 이상발생 현황 모니터링, 경비작동 확인, 원격에 의한 출입관리 제어 및 카드관리, 시설물 안내전화 응대 및 불편처리

- 정전 시 자체 보조전원장치를 이용하여 1시간 이상 시스템 운영
- 대학의 중요실(내역참조)에 락(자동잠금장치)을 설치하여 출입통제

2) 화재 및 정전감시 시스템

- 건물 화재 수신반의 외부 출력신호와 연동하여 24시간 Setting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신호를 감시함.(화재신호 점검 후 자동 복구 포함)
- 화재신호 접수 시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모든 출입문은 자동 개방모드로 설정되어 내부 잔류 인원이 대피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함.
- 화재신호 접수 시 담당자에게 문자(유선)로 통보하며 통합경비상황실에 통보하여 현장을 확인하도록 협조함.

3) 출입통제 시스템

- 각 출입구 출입문에 전기정(LOCK)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함.
- 각 출입구 출입문은 실제 개방여부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입문 안쪽에 EXIT 버튼 설치(퇴실버튼 동작 안내판 부착)
- 각 건물 현관 주출입문(출입통제 설치 개소)은 LOCK으로만 설치,운영한다.

4) CCTV 시스템

- 모든 NVR은 각 동 지정장소에 설치함.(1개월 이상 녹화 가능)
- 통합감시용 NVR에 취약지역의 Camera를 연결하고, 통합 관리를 하여야 한다.
- 모든 카메라는 본관1층 경비실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중요 포인트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 학교소유의 카메라를 연동하여야 한다.

5)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 운영

- 여자화장실 내 입구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개별적인 Main Controller와 개별적인 Account로 별도 관리하며, 세트여부와 상관없이 경비사 관제센터와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각 화장실 내 위치를 표시하여 알람 발생 시 위치가 표시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방법전용 네트워크망 구축(전용 광망구축)

- 독립적인 네트워크(광망)를 구축하여 학내 네트워크와 분리하여야 한다.
- 무인경비 및 영상감시 시스템을 전용네트워크(광망)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끊임없는 이중관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II. 통합경비시스템 기기규격 및 설치 시방서

1. 공 사 명: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2. 대상건물 및 경비실수

- 대상건물 및 경비실수(무인경비 447개 , 출입통제 69개소)
- 세부기기 설치내역(기존 설치제품 및 추가사항) 불입으로 첨부함

3. 설치공사기간(통합경비시스템) : 계약일부터 15일

4. 주요기기 규격

-본 규격은 기계경비시스템 기기특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Main Controller

- 1) 무인경비를 설치하는 주요실, 출입통제, 화재(정전)감시를 실시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TCP/IP, 9600bps 비상전용회선, PSTN을 이용하여 통합경비 시스템의 본관 경비상황실과 경비업체의 종합통합경비상황실로 신호를 전송하는 장비이다.
- 2) 세트/해제, 출입 등의 명령데이터를 카드리더기와 원격지의 서버로부터 전송받아 전기정을 이용한 출입문 제어, 감지기를 이용한 침입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3)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세트, 해제, 출입, 근태)
- 4) 정전 시를 대비하여 정전용 배터리가 내장되어야 한다.
- 5) 향후 건물의 확장 및 변경에 대비하여 충분한 확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6) 출입문의 정기적인 개방과 폐쇄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Main Controller는 자체 스케줄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7) Main Controller는 많은 출입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입 권한을 구현하여야 한다.

나. 카드리더기

- 1) IC-RF 카드리더기는 통합방범시스템에서 방법 및 출입통제를 적용 시 전기정을 제어하는 기기로서, 네트워크 LAN 또는 422/485통신을 하여 상위로는 전용 회선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경비회사의 종합관계센터와 통신을 한다.(시중은행

A/B-TYPE 통합 카드리더)

- 2) 카드리더기는 방법, 출입관리 기능이 복합적으로 내장된 기기로 현 상태에 대하여 음성 및 LED로 표시한다.

다. 보조전원장치

본 기기는 보조전원장치로서 기계경비시스템의 부속기기에 동작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 전원장치이다. 정전 시에도 전원의 중단 없이 기기에 전원을 연속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야하며, 자체적으로 배터리 시험기능과 그 외 표시로서 정상동작 및 배터리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비상램프(경광등)

※ 대학본부 및 도서관 설치분

- 1) 경광등은 ALARM SYSTEM(방범시스템) 등 각종 경보 시스템 운용 중, 이상발생 시 자동으로 점멸하여 긴급대처 요원이 현장을 용이하게 찾은 후 확인, 대처 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기이다.
- 2) 경광 등 설치 시 외부에 부착 하여, 침입자의 사전파손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외부 설치 불가능 시 비상램프의 작동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곳

마. 자석감지기

출입문에 설치되어 이상 발생시 RF(비접촉 근접식) 카드리더기에 신호를 송신하는 감지기를 말하며, 자체극성의 일치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열선감지기

경비구역의 실내공간에 설치되어 이상발생 시 로컬컨트롤러에 신호를 송신하는 기기를 말한다.

사. 전기정(D/B, E/M)

전기적으로 출입문을 잠금 및 해제하는 기기로서 전기의 입출력으로 구동하는 전자 잠금장치(D/B의 경우 자석감지기를 설치하여 실제 개방 여부가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아. 락 개폐기(퇴실버튼)

락 개폐기는 락 컨트롤러에 신호를 전송하여 출입문이 제어되도록 하는 기기이다.

자. 비상벨 시스템(여자화장실)

여자 화장실 내부 위급 상황이 발생 되면 신호 전송 가능한 기기이다.

차.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 1) 200/500(각관 현관)만화소(FULL HD) 이상이어야 하며, 195EA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CCTV가 설치된 곳에는 법령에 따라 설치고지(안내판 설치)를 하여야 한다.
- 3) 모니터링 및 영상정보 검색 시 HD화질로 끊김이 없어야 한다.
- 4) 녹화장치는 건물 지정장소에 NVR설치하고, 영상 모니터링은 본관 1층 경비실 모니터링 가능하여야 한다.

5. 공사내용

- 1) 방범시스템 구성
- 2) 배선, 배관공사
- 3) 시방에 대한 공사, 시운전

6. 공사 범위

공사범위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 1) 배관, 배선
- 2) 기기설치 및 시운전, 제반 결선 작업
- 3) 운영자 교육 및 보수 매뉴얼 작성
- 4) 공사, 준공도면
- 5) 기타 공사에 따르는 제반사항.
- 6) 시스템 구성상 사소한 잡자재의 추가, 증설

7. 배선/ 배관 공사의 기초사항

가. 배선공사(케이블 : 전선, 신호선)

- 1) 어떤 케이블도 중간연결을 할 수 없으며, 케이블의 종단 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2) 배선 공사 시 타배선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 시킨다.
 - 저압 옥내배선 : 100(절연전선) ~ 300(나선)mm 이상
 - 고압 옥내배선 : 150(절연전선)mm 이상
- 3) 타 배선에 절연관 또는 내화벽이 설치되어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는 2)의 이격거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 4) 전원 전선과 제어 신호선은 분리, 포설하여야 한다.
600V이하 회로의 전선으로서 각 전선의 절연이 600V급 이상이면, 같은 TRAY(천정 배관로)에 수용할 수 있다.
- 5) 케이블 설치 중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조임, 굴곡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 되어야 하며, 설치 중 손상된 전선, 피복이 찢어진 케이블은 여하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 6) 차폐층이 있는 모든 전선은 그 전선이 종단 처리되는 전기박스 혹은 전기 배선보드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한다.
- 7)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케이블은 당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합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케이블은 과열 지역이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피하여 포설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화인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장 및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방화 격벽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9) 모든 케이블은 종단에서부터 최소 1M 이내 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케이블 종단에 수직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고정, 목대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 한다.
- 10) 케이블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 11) 설치된 케이블은 현장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분전반 차단기와 기기에 연결된 전원선은 절연전선 FCV 4SQ 3C를 사용하며 콘센트에서 장비 전원 연결은 불가하다.

나. 배관공사

- 1) 배관 공사 시 건물 등 구조물의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한다.
- 2) 배관의 분기점 및 루프의 시작점에는 사각 박스를 사용한다.
- 3) 배관경로는 수평 및 수직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즉 직각 배관을 실시한다.
- 4) 배관경로가 수평방향으로 30m를 넘을 경우 중간에 연결박스를 설치한다.
- 5) 수직방향으로 배관 시는 8m 이하마다 연결박스를 설치하고, 박스내에서 배선을 고정하여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
- 6) 박스는 은폐하지 말고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며 반드시 박스 커버를 부착한다.
- 7) 배관은 미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게 배관을 하고 특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를 골라서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 8) 외부 노출 배관로는 담장 구조물을 따라 설치하고 계단을 지날 때는 계단 하부에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 9) 외부에 설치되는 도급자재는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텐인레스 재질을 사용한다. (비스, BOX, 새들)
- 10) 배선의 접속은 박스내에서 실시하며 접속부분은 반드시 방수처리를 한다.
- 11) 주장치가 설치되는 인입구에는 PVC 연결 박스를 설치한다.
- 12) 기존 시설물 훼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
- 13) 신호선, DC 전원선은 동일 배관 내에 포설할 수 있다.

단, 전압이 다를 경우는 별도 배관을 하여야 한다.

- 14) 석면공사 관련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9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비용은 낙찰업체 부담으로 함
- 15) 기타 유도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배선은 별도 배관을 하여야 한다.

8. 노출 케이블 배선공사

- 1) 케이블의 콘크리트 매입(직접) 공사는 절대 금한다.
- 2) 천정 내나 중간 벽이 비어있는 벽면 등에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축에 있어서는 중간 벽 내에 배선 작업 시는 케이블 고정 장치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 3) 천정 내 배선의 경우 천정내의 환풍에 케이블 고정 장치나 동선 고정 장치로 케이블을 고정시켜야 한다.
- 4) 케이블을 천정 내 배선 공사 시 옥내로 내려오는 부분에 PVC 몰드로 처리하고 기기까지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PVC 몰드 내에서 다른 케이블이나 신호선 케이블을 평행선으로 바꿔 접속하는 것은 금한다.
- 5) 옥외 노출 케이블 공사 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에 케이블을 포설하고 케이블의 고정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PVC 케이블 고정 장치로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수평 / 수직방향 : 0.5m 이하
 - 구부러지는 부분 : 0.3m 이하타 설비, 배관 등에는 케이블을 절대 고정시키지 말아야 한다.

9. 몰드 배관공사

- 1) 천정면, 벽면에 포설하는 경우는 사각부분을 따라 눈에 띄지 않도록 포설하며, 설치 후 변형이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취부한다.
- 2) 벽면 하단부로의 배관은 하지 않는다.
- 3) 고정용 나사는 접시머리나사를 사용하며 길이는 10mm 이상의 것을, 직경은 3.5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 4) 취부면이 대리석, 타일 등 나사로 고정할 수 없는 곳은 실리콘 접착제를 몰드 양면 테이프와 병행하여 취부한다.
- 5) 몰드의 나사 고정 간격은 몰드 길이에 따라 다음과 같다.

- 60cm ~ 100cm : 몰드 양단에서 10cm의 위치와 전체 길이의 1/2 위치에
총 3개소에 나사로 고정 시킨다.
 - 60cm 미만 : 몰드 양단에서 10cm의 위치 총 2개소에 나사로 고정
 - 6) 절단면은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접합면은 틈사이가 벌어지는 곳이
없도록 하며, 굴곡부분의 가공 시는 절단면 각도를 45° 씩 절단하고 굴곡
부분은 90° 가 되게 하여야 한다.
 - 7) 몰드의 종단부분 처리는 기기 등의 배선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뚜껑
부분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열려있는 부분을 막아 주어야 한다.
 - 8) 몰드는 천정 면, 벽면을 기준으로 수평, 수직으로 취부해야 한다.
 - 9) 몰드를 연결 할 때는 층이 지거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 10) 몰드의 색상은 취부면의 색조와 맞게 선정한다.
 - 11) 몰드 내 선로 접속 시 접속부가 겹치지 않도록 엇갈리게 포설한다.
- ※ 모든 배관은 비노출 배관으로 하며, 노출시 협의후 진행**

10. 기기설치 공사

- 1) 기기설치는 감독관 입회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 2) 기기는 취급에 주의한다.
- 3) 공사 진행 중 기기의 도난, 파손의 경우는 도급자가 책임 변상한다.
- 4) 모든 기구물은 회사에서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제작 설치한다.
- 5) 모든 기기는 부착 후 정확하게 조정하고 테스트를 실시한다.

11. 합성수지(PVC) 전선관 공사

- 1) 배관재는 PVC HI PIPE(내충격강화경질비닐전선관)를 사용한다.
- 2) 전선관의 상호접속은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하며, 이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해야 한다.
- 3) 전선관과 박스를 접속하는 경우는 콘넥터(연결장치)를 사용하며, 이는 접
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해야 한다.
- 4) 전선관을 조형물 등에 취부하는 경우에는 스텐인레스 새들을 사용하며
1m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12. 금속(STEEL) 전선관 공사

- 1) 배관재 및 부속품은 녹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도금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 2) 금속관의 절단면은 리머로 다듬어 배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금속관의 상호접속은 반드시 커플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해야 한다.
- 4)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하는 경우는 로크너트를 사용하며 끝부분에는 부
싱을 접속하여 배선피복을 보호해야 한다.
- 5) 금속관을 조형물 등에 취부하는 경우에는 스텐인레스 새들을 사용하며
2m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 6) 1개 구간에서 구부리는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한다.
(굴곡부분 각의 합계가 27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13. 매설 배관공사

- 1) 파상형(지중매설전선보호) PVC전선관을 사용하며 경고 표시를 지하 40cm
지점에 깔고 되 매우기를 한다.
(전기, 통신 공사용 경고 표시)
- 2) 케이블 포설 시에는 모래를 채우고 복개한다.
- 3) 되 매우기에는 매 15cm마다 다지고, 되 매우기 후의 남은 토사는 바로 정리
- 4) 지중 케이블의 타 공작물과 교차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하부에
매설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둔다.
-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6) 직접 매설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판 또는 테이프로 매설표식을 한다.
- 7) 도로횡단이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지역에 핸드홀(수리를 위한 구멍)을
설치한다.

14. 가공 배선공사

- 1) 가공배선은 사용하는 전압에 의해 전선로의 지지점간을 다음과 같이 정
한다.
 - 직류전원선 및 신호선 : 25m 이하
 - AC 저압용 전선 : 30m 이하
- 2) 가공배선의 높이는 공사장소에 따라 설치 높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폭 5m 이상의 도로횡단 경우
 - DC전원선, 신호선, AC 저압용 전선 : 6m 이상
 - 구내(사람, 차량 통행이 많은 곳)
 - DC전원선, 신호선, AC 저압용 전선 : 4m 이상

- 구내(사람, 차량 통행이 없는 곳)
 - DC전원선, 신호선 : 2.5m 이상
 - AC 저압용 전선 : 3m 이상
- 3) 가공배선의 이격거리는 포설하는 가공배선과 기타의 물건과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 4) 가공배선의 거리는 가능한 짧게 해야한다.
- 5) 배선의 끌어매는 부분은 배선의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공사를 한다.
- 6) 가공배선을 하는 경우는 공사현장의 미관 및 건물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포설한다.
- 7) 전주의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그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공사를 해야한다.
- 8) 공사 중 작업부분의 안전 확보나 교통 조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CHANNEL 공사(배선 보드)

- 1) CHANNEL(배선보드)내 배선은 CABLE을 사용하며 2m 이하마다 케이블 지지구로 고정하고 케이블이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 2) CHANNEL(배선보드)내 케이블 배선 후 기기와의 접속 부분은 PVC 몰드 또는 노출 4각 박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접속한다.
- 3) CHANNEL(배선보드)내 비나 물 등의 침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선의 접속부분에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 4) CHANNEL(배선보드)내 굴곡 부분 내 CABLE 포설 시는 0.5m 이하마다 케이블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6. TRAY(천정 배관로) 및 DUCT(벽부 몰드) 공사

- 1) 동일 TRAY(천정 배관로) 및 DUCT(벽부 몰드) 내에 고압 케이블과 저압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SEPARATOR(분리장치)를 설치한다.
- 2) CABLE TRAY(케이블 천정 배관로) 배선 시 사용전압에 따라 TRAY(천정 배관로)가 분리 혹은 분할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는 TRAY에 배선을 포설해야 한다.
- 3) 케이블 TRAY(천정 배관로)에 케이블 포설시 동선 묶음장치나 케이블 묶음 끈으로 케이블을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수평방향 : 1.5m 이하
 - 수직방향(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 1m 이하
 - 굴곡부분 : 0.5m 이하

- 4) 신호선이 아닌 전선을 CABLE TRAY(천정 배관로)에 포설하는 경우, PVC PIPE(합성수지파이프)등의 배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일정한 가격으로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고정 간격은 3)항과 동일하다.
- 5) TRAY(천정 배관로) 혹은 DUCT(벽부 몰드)로부터 기기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전선관을 사용하며, TRAY(천정 배관로)로부터 하부로 배관 시에는 SERVICE CAP(배관입구 덮개)을 사용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공사하며, 케이블이 TENSION(압력/하중)을 받지 않도록 배선한다.
- 6) 케이블 양 끝단에 CABLE SCHEDULE(케이블 관리리스트 표)에 표시된 번호가 새겨진 식별 표를 부착한다.

17. 피뢰침 및 접지공사

- 1) 각 구조물의 접지는 3종(100 Ω 이하) 접지한다.
- 2) 접지봉은 1m×14mm를 사용하며 접지봉과 접지선 사이는 납땜 처리한다.
- 3) 접지 공사 후 접지 체크를 한다.

Ⅲ.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특수조건

제1장 기본조건

광주여자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의 통합경비시스템 계약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용역경비업법에 따라 광주여자대학교가 위탁한 대상물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경비를 함으로써 “갑”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건물 및 실수) 무인경비의 대상건물 및 경비실수와 설치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건 물 수: 9개 건물, 447개실(무인경비 및 출입통제)
2. 용역범위: 무인경비, 출입통제, CCTV, 화재 및 정전, 여자화장실 비상벨,

제3조(계약기간)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02.28.까지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물”이란 “갑”이 “을”에게 용역경비를 위탁한 “갑”의 인명과 재산을 말한다.
(“갑”의 교직원의 감시구역내 재산도 대상물에 포함됨)
2. “설치기기”란 경비를 위하여 대상물에 설치한 “갑”과 “을”의 기기를 말한다.
3. “설치공사”란 경비용역에 필요로 하는 모든 부착물 공사를 말한다.
4. “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협을 말한다.
5. “이상정보”란 설치기기에 의하여 감지된 사고 또는 설치기기의 불량상태로 인한 발생정보를 말한다.
6. “긴급대처”란 이상정보에 대하여 “을”이 취하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7. “감시구역”이란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을”의 방법시스템에 의해 이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공업무) 용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방법·방호 관련 제반업무(실별 경비)
2. 출입관리 및 원격관리(주요 출입문, 대학지정 개별실)
3. 화상감시(취약지역 감시, 출입자 감시, 시설물 감시)
4. 비상통보(여자화장실 및 지정장소)

제6조(경비 구역 및 시간)

1. 경비구역

- 대학에서 지정하는 각실(Block)별로 경비

2. 경비시간

- 각 실별 구역 경비 : 기계조작(세트) 시작부터 해제 작동 시까지
(단, 해제 시에도 기본경비 운영)

제7조(기밀유지)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실행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갑”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정보도 열람, 이용, 누설을 할 수 없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긴급연락처)

① “갑”은 긴급연락처를 위한 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통보한 긴급연락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설치)

① “을”은 기계경비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2조에 의한 시설내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주장치, 카드리더기, 전자자석감지기, CCTV,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일체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 후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설치하여야 할 기기의 종류, 수량 및 장소 등은 불임의 실별 출입통제·기계경비시스템 설치 내역서 및 도면과 같이 설치하며, 이상정보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기기와 회선을 사용하되 “갑”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을”이 “갑”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그 피해액을 설치비 및 월 용역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설비) “을”은 이상정보를 수신하는 기계설비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갑”

이 제공한 장소에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설치공사 및 월정용역료의 변경) ① “을”은 계약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추가설치공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용역계약분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신규(추가)공사로 인하여 “을”의 경비대상 시설이 증가할 경우 설치공사 완료 후 “을”은 “갑”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료 증가분은 상호협의 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익월부터 지급한다.

③ 추가로 설치한 기계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경비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분에 대한 경비의 소홀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확인 및 긴급대처) “을”은 관제설비에 의하여 대상물의 사고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공업무내용에 따라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정지) “을”은 천재지변, 전쟁, 동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업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동안 “갑”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또한 용역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주의의무) ① “갑”은 “을”이 항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의 설치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의무는 “갑”의 교직원 또는 “갑”의 관리하에 있는 자에게까지 미친다.

제16조(보수점검) “을”은 설치기기를 정기적으로 보수 점검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허용) “갑”은 설치기기의 보수점검·기타 관리를 위하여 “을”의 업무담당자 또는 “을”이 지정한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을”의 위임장 및 직원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18조(열쇠의 예탁) ① “갑”과 “을”은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열쇠(CARD KEY포함, 이하 같음)를 상호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받은 열쇠의 보관증을 발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서로 예탁받은 열쇠를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열쇠를 한

개라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호 통보하고 분실자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이 계약이 끝났거나 해제되었을 때에는 상호 보관 중인 열쇠(CARD-KEY)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대상물 변경) ① “갑”은 대상물의 증축·개축·구조변경·용도변경 등으로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이전할 때에는 이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은 대상물에 인접한 건물의 구조등 주위상황의 변화 또는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대상물의 용역경비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제공업무수행에 필요하면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갑”의 통보유무에 관계없이 “갑”과 협의를 거쳐 경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개선의 요청) “을”은 이 계약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상물의 시설에 대한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의 합의하에 보완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용역료 지급) ① 월용역료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용역수행 여부를 검수하여 익월 초에 지급하고,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제공업무가 정지되었을 때에는 월정 용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한달 미만의 월정 용역료는 일할 계산하며 그 달의 날짜 수에 관계없이 한달은 30일로 계산한다.

제22조(보험가입) “을”은 “을”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을”은 업무 개시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을”의 고의 및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제23조 제3항의 배상한도액 내에서 배상한다.

② “을”의 고의 및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의 피해액 확정은 손해사정인 및 경찰의 조사결과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결정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배상한도액은 방범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한해서는 사고 당 대인 배상으로 한 명당 이천만원 한도로 합계 2억원과 대물배상으로 3억원, 총계 5억원으로 한다.

제24조(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①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해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손해액을 “을”에게 청구한다. 단,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갑”의 면책)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이 계약의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업무담당자 및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상해
2.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제26조(“을”의 면책)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의 종업원이 기본조건 제3조에 정한 제공업무 이외에 “갑”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2. 천재지변, 전쟁, 동란, 기타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갑”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제27조(“갑”의 해지권) ① “갑”은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서면 통보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신청을 하였을 때
3. “갑”이 “을”의 계속적인 경비업무 용역제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4. “을”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8조(“을”의 해제, 해지권) ① “을”은 업무를 개시하여야 할 시기에 “갑”의 형편이나 잘못으로 업무개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개시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불응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지급기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을”이 “갑”의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독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설치기기의 철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형편이나 잘못으로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설치기기를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을”의 설치기기를 철거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였을 경우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갑”의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써 정한다.

제31조(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32조(계약의 발효) 이 계약은 경비업무개시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장 제공일반업무

【방범제공업무】

제33조(제공업무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방범·방호제공업무는 대상물에 대한 도난 및 기타 고의 과실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발견과 사고의 확대방지를 위한 업무로 24시간 실시한다.

제34조(긴급대처 절차) ① “을”은 경보기기에 의해 감지되는 이상정보에 의거하여 업무를 제공하며, 경비사관제센터에서 이상정보를 수신하면 지체없이 출동요원을 대상물에 긴급 출동시켜 이상상태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파악결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긴급출동을 의뢰함과 동시에 대치요원이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긴급연락처에 연락하고 현장에 출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경계 상태점검)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해 대상물의 출입문창 등의 잠금상태, 숨어있는 사람의 유무, 기타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설치기기를 경계하고 제공업무를 개시한다.

【비상 통보 제공 업무】

제36조(제공업무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비상통보제공업무는 대상물에 설치한 경보기기(비상벨 등)로부터 송신되는 이상정보의 감시업무 및 이상정보 수신시 경찰기관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갑”이 요청한 장소에 통보한다.

② 업무제공시간은 24시간 내내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업무제공 절차) ① “을”은 업무제공시간에 이상정보를 수신하면 “갑”이 요청한 장소로 즉시 상황을 통보한다.

② “을”은 예상치 못한 단신신호를 수신하면 지체없이 “갑”이 요청한 지정된 전화로 상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 결과 사고의 발생이라고 판단될 때 또는 지정된 전화가 불통이거나 통화 중일 때에는 즉시 경찰서에 통보한다.

【화상감시 제공업무】

제38조(제공업무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화상감시 제공업무는 캠퍼스 내에 “갑”의 요청으로 “을”이 설치한 CCTV카메라 화상정보를 본관1층 경비실에서 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을”이 설치한 카메라는 항상 감시, 녹화가 가능하도록 “을”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기기노후로 인한 교체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녹화된 정보를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업무제공절차) “을”은 사고발생 시 “갑”이 1개월 이내 녹화된 정보를 열람하고자할 때 지체 없이 보여줄 의무가 있다.

제3장 협정사항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제공업무를 수행함에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갑”의 설치기기의 경계(SET)또는 해제가 불가능 할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은 설치기기에 훼손 또는 설치기기 및 그 배선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갑”의 형편에 의하여 설치기기를 경계(SET) 약정시간보다 늦게 경계(SET)하고자 할 때와 약정시간 전에 경계(SET)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갑”은 침입의 발판이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정리하여야 하며, 대상물에 대한 주변상황에 의하여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을”에게 사전 통보 없이 대상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과 대상물의 변경으로 인한 설치기기의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그 조정 작업이 완료되어 변경된 경비계획에 의하여 경비가 실시될 때까지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지지 아니한다.
6. “갑”은 정전, 전화불통, 경찰 및 소방서로 부터의 통보사항 기타 “을”의 업무에 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은 그때마다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갑”은 설치기기를 개시할 때에는 사전에 대상물 내에 남아 있거나 숨어있는 사람, 가스 및 수돗물의 유출, 화기, 창문 및 출입문 자물쇠의 잠금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갑”은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방화설비의 주변을 항상 정리하여 소화, 방화설비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 “갑”은 대상물의 개선을 요하는 불완전한 부분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대상물내의 갑의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1. “갑”은 “을”의 사전 허락 없이 대상물의 설치기기에 대하여 경비개시 및 해제 비상통보를 위한 조작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조작, 변조, 위치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을”의 제공업무의 성질상 실외에 있는 “갑”의 물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을”은 모든 제공업무 및 협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을”의 장비 및 선로·기타 부속품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14. “을”이 “갑”의 통신선로를 사용할 경우 “갑”이 정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기타 단선 등으로 인해 무인경비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을”은 이 사실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을”은 방법, 화재, 비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갑”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1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을”과 “갑”의 협의에 의하여 문서로서 정한다.